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2허1773 등록무효(특)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상은

피 고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오재윤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4. 20.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2. 1. 24. 2021당280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 1) 발명의 명칭: 안전망이 구비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
-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9. 1. 24./ 2021. 4. 29./ 특허 제2248807호
- 3) 청구범위

【청구항 1】 건물 외부의 공기를 승강로에 유입시키거나 상기 승강로 내 공기를 건물 외부로 배출시키기 위한 송풍기가 설치되고, 건물의 각 층마다 상기 승강로의 공기 압을 조절하기 위한 자동차압급기댐퍼가 설치되어, 건물의 승강로를 제연 덕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승강로의 측벽 내측에 고정 설치되어 상기 승강로의 측벽에 탈거 가능하게 설치된 자동차압급기댐퍼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승강로 내부 사이에 위치하는 금속 프레임; 및 상기 프레임과 일체 형성되어 다수 개의 구멍을 갖는 안전망을 포함하고, 상기 프레임 및 안전망은 상기 자동차압급기댐퍼가 상기 승강로 내부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특징이 있는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

4) 주요 내용과 도면

개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안전망이 구비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대 **배경기술**

[0004] 통상적으로 제연 시스템은 건물의 지하실에 설치되어 건물 외부의 외기를 건물 내부로 급기시키는 송풍기, 송풍기와 건물의 제연덕트 사이에 설치되어 제연덕트로의 송풍량을 조절하는 시스템 댐퍼, 제연덕트와 건물 각층의 제연 구역 사이에 설치되어 제연 구역으로의 송풍량을 조절하는 급기 댐퍼를 포함하여, 시스템 댐퍼 및 급기 댐퍼의 개폐 날개의 개폐도를 제어함으로써, 제연 구역이 실내 구역보다 높은 공기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0005] 보다 상세하게는, 급기 댐퍼는 개폐 날개의 개폐각을 조절하여 제연덕트로부터 제연 구역으로 유입되는 송풍량을 조절하며, 제연 구역이 비제연 구역보다 40Pa-60Pa(50Pa±20%) 높은 공기압을 유지하도록 하여 화재가 발생된 실내의 연기 또는 유독 가스가 문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에 따라 <u>제연 구역 내의 공기압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화재 발생시 재실자가 출입문을 열고 피난할 때 출입문이 열림에 따라 화재로 인한 연기가</u> 제연 구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0007] 한편, 전술한 제연 시스템은 건물 내부의 별도의 공간에 조적 구조를 형성한 전용 덕트를 이용하는 방식(전용덕트 방식)과, 별도의 전용덕트를 형성하지 않고 건물의 비상용 또는 피난용 승강로를 제연 시스템의 제연덕트로 활용하는 방식(승강로 방식)으로 구별될 수 있다.

[0008]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의 경우, 별도의 전용덕트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물의 공간 활용이나 비용 측면에서 전용덕트 방식에 비해 유리하다.

[0012] 한편, 전술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은 급기 댐퍼가 승강로와 바로 인접해 있기때문에, 급기 댐퍼가 고정이 잘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급기 댐퍼의 유지·보수를 위해 급기댐퍼를 탈거하였을 경우에는 승강로가 그대로 외부로 노출되어 안전상 크게 취약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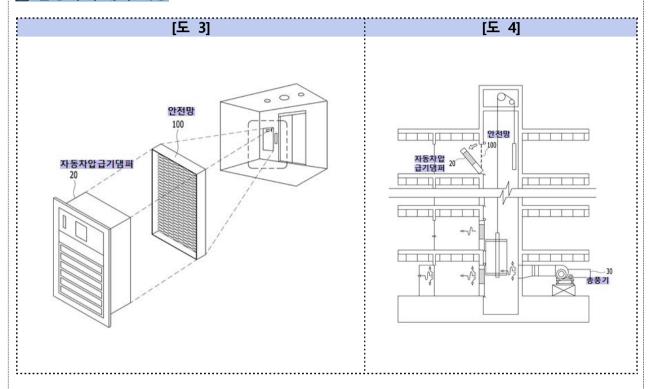
[0014] 이러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에서는 급기 댐퍼(20a, 20b, 20c)가 승강로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급기 댐퍼(20a)가 설치된 위치로부터 이탈되는 경우에 승강로가 외부로 노출되게 되며, 이를 통해 사람이 승강로로 떨어진다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이 있다.

대 해결 과제

[0017] 본 발명은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에 있어서 승강로의 측벽 내측으로 자동차압급

기댐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고정 설치하여 자동차압급기댐퍼가 승강로 내부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안전망이 구비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때 발명의 구체적 내용



[0028] 보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의 안전망이 구비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은 건물 외부의 공기를 건물 내부의 승강로에 급기시키는 송풍기와, 송풍기와 건물의 승강로 사이에 설치되는 시스템 댐퍼, 승강로와 건물 각 층의 실내 구역 사이에 설치되는 자동차압급기댐퍼 및 시스템 댐퍼와 자동차압급기댐퍼의 개폐 날개의 개폐도를 제어함으로써 승강로 내의 공기압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제어기를 포함할 수 있다.

[0030]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안전망이 구비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은 기존의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에 있어서, 승강로의 측벽 내측으로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고정 설치하여 자동차압급기댐퍼가 승강로 내부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것에 특징이 있다.

[0031] 도 3은 본 발명의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의 안전망 설치 형태를 개략적으로 보인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자동차압급기댐퍼(20)는 승강로의 측벽에 설치되며, 자동차

<u>압급기댐퍼(20)가 설치되는 위치에 자동차압급기댐퍼(20)가 승강로 내부로 이탈되는 것을</u> <u>방지하기 위한 안전망(100)이 고정 설치</u>된다.

[0032] 본 발명의 <u>안전망(100)은 금속으로 된 사각 프레임 형상에 공기가 유통할 수 있도록</u> <u>다수 개의 구멍을 갖도록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u> 안전망(100)을 승강로의 측벽에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서 일정 간격으로 피스를 결합시킬 수 있다.

[0034]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안전망이 구비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은 건물 외부의 공기를 승강로에 유입시키거나 승강로 내 공기를 건물 외부로 배출시키기 위한 송풍기(30)와, 건물의 각 층마다 설치되어 승강로의 공기압을 조절하기 위한 자동차압급기댐퍼(20) 및 승강로의 측벽에 고정 설치되어 자동차압급기댐퍼가 승강로 내부로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100)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35] 전술한 본 발명의 안전망이 구비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에 의하면, 승강로의 축 벽 내측으로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고정 설치하여 자동차압 급기댐퍼가 승강로 내부로 이탈 또는 낙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기존의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에 비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갑 제4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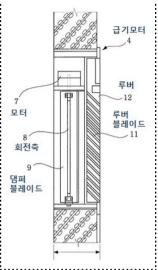
2003. 3. 6. 공개되어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2003-18992호에 게재된 '제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아래와 같다.

② 발명이 속하는 분야

[0002] 본 발명은 빌딩, 아파트 등과 같은 고층건물에 화재 발생 시 연기,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도록 제연구역(화재 발생시 각 층의 승강기 앞의 대피구역을 말함)에 외부공기를 강제적으로 공급하는 덕트로서 승강기 승강로를 활용하여 건물 전층의 제연구역에 대해 외부공기 공급량이 일정토록 한 제연방법에 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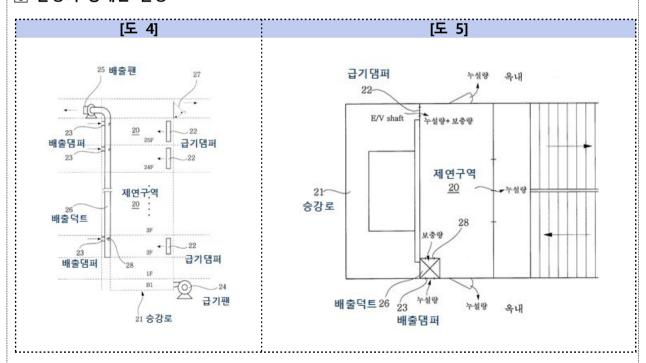
[0003] 더욱 상세하게는, 제연구역에 공급되는 설정풍량이 승강기 [도 3] 승강로 내에서 이동시 풍속이 극히 적어서 마찰 손실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줄어들어 승강기 승강로 내 상하층간 정압이 유지되어 건물 전층의 제연구역에 설정풍량을 정확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 물전층 급기댐퍼의 개구면적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이 불필요한 승강기 승강로를 제연덕트로 이용하는 제연방법에 관한 것이다.

[0008] 이 때, 도 3에 개략적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화재 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조작에 의해 구동하여 전술한 급기덕트(2)로부터 제연 구역(1)에 공급되는 공기량 및 방향을 제어하는 급기댐퍼(4)는, 모터 물레이드(7)에 축고정되는 회전축(8)과, 회전축(8) 구동시 연동되어 좌우방향으로 각각 회전되도록 링크 및 연결바를 통해 연결되는 수개의 댐퍼블레이드(9)와, 댐퍼블레이드(9)후방으로 고정지지되어 내부를 은



폐시키면서 내부의 해당 부품을 만지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다수의 루버블레이드(11)가 형성된 루버(louver)(12)로서 구성된다.

③ 발명의 상세한 설명



[0022] 이하에서, 본 발명에 의한 승강기 승강로를 제연덕트로 이용하는 제연방법을 고층건물 및 지하층에 적용한 예를 도 4 및 도 5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0023] 고층건물 및 지하층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수동조작 또는 화재 자동감지장치의

작동에 따라 전술한 급기팬(24) 및 배기팬(25)이 작동하며, 이때 건물 전층의 급기댐퍼(22) 및 배출댐퍼(23)를 개방함에 따라, 급기팬(24)을 통해 외부로부터 흡입되는 신선한 공기는 전술한 승강기 승강로(21)에 유입된 후, 건물 전층의 개방된 급기댐퍼(22)를 통과하여 전층의 제연구역(20)에 순차적으로 급기되는 것이며, 제연구역(20)에 공급되는 공기량이 제연구역(20)의 각종 틈새를 통해 빠져나가는 누설량과 평형상태를 이룬 후 보충량에 따라 설정압에 도달하게 되고, 이때 옥내와는 설정된 차압(50Pascal 정도)이 발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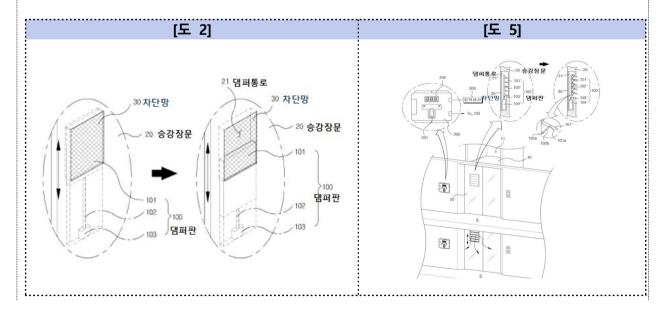
2) 선행발명 2(갑 제5호증)

2011. 11. 21. 공개되어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2011-125482호에 게재된 '자동차압댐퍼를 내장한 승강장문'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아래와 같다.

② 발명이 속하는 분야

[0001] 본 발명은 승강장문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히는 건축물 화재 발생시 피난경로 를 제공하는 건축물의 승강기용 승강장으로 풍압을 공급하는 자동차압댐퍼를 내장한 승강 장문에 관한 것이다.

③ 발명의 상세한 설명



[0024] 상기 길로틴형 자동차압댐퍼(100)가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문(20)에 천공된 댐퍼 통로 (21)의 전방에는, 도 1과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승강장(S) 측에서 상기 승강기(10) 승강로(11) 쪽으로 이물질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방된 댐퍼 통로(21)에 사람의 손이나 팔을 집어넣지 못하게 사람의 손이나 팔을 집어넣지 못하게 하는 차단망(30)이 설치되어 있다. [0046] 상기 날개형 자동차압댐퍼(100')가 설치되는 승강장문(20)에 천공된 댐퍼 통로(21)의 후방에는 승강장(S) 측에서 상기 승강기(10) 승강로(11) 쪽으로 이물질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단망(30')이 설치된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피고는 2021. 9. 24.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2)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를 2021당2804호로 심리한 다음, 2022. 1. 24.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1) 선행발명 1에는 급기댐퍼 후방에 선행발명 2의 차단망과 같은 구성을 결합하여 이사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는 동기나 시사가 없다.

-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안전망은 급기댐퍼의 이탈을 방지하는 구성인 반면, 선행발명 2의 차단망은 급기댐퍼 자체의 이탈을 막는 구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명의 기술사상이다르다.
- 3) 이 사건 특허발명의 안전망은 금속프레임과 함께 승강로 측벽 내측에 고정 설치되지만, 선행발명 2의 차단망은 금속프레임 없이 승강장문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 피고

-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불명확하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위배된다.
-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기재 중 '금속 프레임'과 대응되는 구성이 발명의 설명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는 금속으로 된 사각 프레임 형상과 일체화된 '안전망'이라는 하나의 구성요소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는 '안전망'이 '금속 프레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범위에는 '안전망'과 별도로 '금속 프레임'이 있고, 금속 프레임을 포함하는 안전망이 금속 프레임과 다시 일체 형성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특허발명의 위와 같은 기재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불명확하다.
-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재불비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고 명확하다.

따라서 피고의 기재불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과제의 해결 수단'에는 금속 프레임이 명시되어 있다.
- 2) 이 사건 특허발명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는 '안전망(100)은 <u>금속으로 된 사각 프레임 형상</u>에 공기가 유통할 수 있도록 다수 개의 구멍을 갖도록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금속 프레임이 '금속으로 된 사각 프레임 형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도면 3의 안전망(100) 테두리부에는 사각 프레임 형상이 도시되어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

[0020] ..., 승강로의 측벽 내측에 고정 설치되어 승강로의 측벽에 탈거 가능하게 설치된 자동차압급기댐퍼와 <u>승강로 내부 사이에 위치하는 금속 프레임 및 상기 프레임과 일체 형성되어 다수 개의 구멍을 갖는 안전망을 포함하고</u>, 상기 프레임 및 안전망을 자동차압급기댐퍼가 상기 승강로 내부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특징이 있다.



[0032] 본 발명의 <u>안전망(100)은 금속으로 된 사각 프레임 형상에 공기가 유통할 수 있도록</u> <u>다수 개의 구멍을 갖도록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u> 안전망(100)을 승강로의 측벽에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서 일정 간격으로 피스를 결합시킬 수 있다.

3) 이 사건 특허발명에 '안전망(100)은 금속으로 된 사각 프레임 형상에 공기가 유통할 수 있도록 다수 개의 구멍을 갖도록 제작'이라는 기재는 있으나, 도면 3에는 다수 개의 구멍을 가진 안전망과 그 테두리부를 구성하는 별도의 사각 프레임 형상이 명확히 도시되어 있다.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안전망(100)이 자체적으로 금속의사각 프레임 형상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로 형성될 금속으로 된 사각 프레임 형상내에 위치하고, 공기가 유통할 수 있도록 다수 개의 구멍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어

려움이 없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

1) 구성요소별 대비

| 구성 요소 | 이 사건 특허발명 | 선행발명 1 |
|----------|---------------------------|--------------------------|
| 1 | 건물 외부의 공기를 승강로에 유입시키거 | 화재 발생시 급기팬을 구동하여 외부의 |
| | 나 상기 승강로 내 공기를 건물 외부로 | 신선한 공기를 승강기 승강로(21)로 유입 |
| | 배출시키기 위한 송풍기(30)가 설치되고, | 시키고, 승강로(21)를 통해 흐르는 공기 |
| | 건물의 각 층마다 상기 승강로의 공기압 | 가 급기댐퍼(22)를 통해 제연구역(20)으 |
| | 을 조절하기 위한 자동차압급기댐퍼(20) | 로 공급되게 하되, 제연구역(20)이 차압 |
| | 가 설치되어, 건물의 승강로를 제연덕트 | 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연방법 |
| |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승강로 방식의 | |
| | 제연 시스템에 있어서 | |
| 2 | 상기 승강로의 측벽 내측에 고정 설치되 | 승강기 승강로(21)의 건물 전층에 설치된 |
| | 어 상기 승강로의 측벽에 탈거 가능하게 | 급기댐퍼(22) |
| | 설치된 자동차압급기댐퍼(20) | |
| 3 | 상기 승강로 내부 사이에 위치하는 금속 | |
| | 프레임 및 상기 프레임과 일체 형성되어 | <대응구성 없음> |
| | 다수 개의 구멍을 갖는 안전망(100)을 포 | |
| | 함하고, 상기 프레임 및 안전망(100)은 상 | |
| | 기 자동차압급기댐퍼(20)가 상기 승강로 | |
| | 내부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 |

2) 공통점과 차이점

가) 구성요소 1,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 2와 선행발명 1은 승강로의 공기압을 조절하기 위한 급기댐퍼와 팬(송풍기, 급기팬)이 설치되고, 건물의 승강로를 제연덕트로 활용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 구성요소 3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3은 '자동차압급기댐퍼가 승강로 내부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강로 내부 사이에 금속 프레임 및 금속 프레임과 일체 형성되어 다수 개의 구멍을 갖는 안전망'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응되는 구성이 선행발명 1에는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이하 '차이점'이라 한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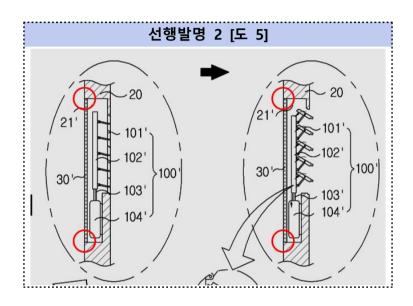
3) 차이점에 대한 검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해당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가) 선행발명 2는 건물의 승강로를 제연덕트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하는데, 선행발명 2에는 '승강장(S) 측에서 상기 승강기(10) 승강로(11) 쪽으로 이물질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단망(30')'이 개시되어 있다.
- 나) 선행발명 2의 차단망에 자동차압댐퍼가 승강로 쪽으로 이탈을 방지한다는 점과 그 형상에 관한 명시적인 기재는 없다. 그러나 자동차압댐퍼가 이탈할 위험이 있다면 자 동차압댐퍼 자체도 하나의 이물질로 볼 수 있고, 통상적으로 '망'은 마무리 또는 안전을 위해 테두리부를 가질 수 있다.
- 다) 어떤 구조물이 한쪽 방향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을 두거나 이탈 방지 펜스, 망 등을 설치하는 것과 망을 설치할 경우 망의 형태 유지나 결합 등을 위해 망 둘레에 프레임 등을 설치하는 것 정도는 통상의 창작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한 효과 역시 기술적 상식에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자동차압급기댐퍼가 승강로 내부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속

프레임과 일체 형성되어 다수 개의 구멍을 갖는 안전망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특히 선행발명 2 도면5의 차단망(30')과 승강장문(20)의 연결구성을 고려하면, 해당 차단망은 프레임 형태의 테두리부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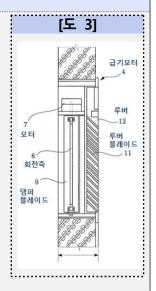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검토

가) 원고는, 선행발명 1에 내부를 은폐시키면서 내부의 해당 부품을 만지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편칭플레이트 또는 와이어망으로 형성된 루버가 있으므로,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차단망을 결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선행발명 1의 루버는 급기댐퍼 내부를 은폐시키면서 댐퍼 등 내부 부품을 만지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안전망이나 선행발명 2의 차단망과는 해결 과제가 다르다. 선행발명 1의 루버는 댐퍼와 실내 사이에 설치되므로, 이로써 댐퍼와 승강로 사이에 '망'을 설치하는 데 물리적 장애가 초래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선행발명 1의 루버로 인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차단망을 결합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선행발명 1

[08] 이때, 도 3에 개략적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화재 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조작에 의해 구동하여 전술한 급기덕트(2)로 부터 제연구역(1)에 공급되는 공기량 및 방향을 제어하는 급기댐퍼(4)는, 모터(7)에 축고정되는 회전축(8)과, 회전축(8) 구동시 연동되어 좌우방향으로 각각 회전되도록 링크 및 연결바를 통해 연결되는 수개의 댐퍼블레이드(9)와, 댐퍼블레이드(9)후방으로 고정 지지되어 내부를 은폐시키면서 내부의 해당 부품을 만지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다수의 루버블레이드(11)가 형성된 루버 (louver)(12)(펀칭플레이트 또는 와이어망으로 형성됨)로서 구성된다.



다. 소결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임경옥

판사 윤재필